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7-13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9,560,000원, 지방교육세 6,832,000원, 농어촌특별세 8,5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5. 3. 11. 국가결핵 사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결핵병 근절과 호흡기 질환 퇴치 및 국제항결핵운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결핵예방접종백신(이하 'BCG백신'이라 한다)의 생산과 연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건물 취득 및 위탁생산

원고는 2008. 12. 30. 주식회사 ■■■자(이하 '■■■자'라 한다)와 BCG백신 생산 시설 구축 및 생산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4.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한 후, 2011. 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녹십자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녹십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여 BCG백신을 위탁생산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및 과세처분

피고는 2011. 4. 12.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위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과세전환 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4. 12. 8. 원고에게 취득세 119,560,000원, 지방교육세 6,832,000원, 농어촌특별세 8,540,000원 합계 134,932,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제3자인 ■■■■에게 위탁하여 BCG 백신을 생산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0조가 규정하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직접 사용'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개정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의해 비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한 경우인지

1) 관련 법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후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여 BCG백신을 위탁생산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BCG백신의 생산'이라는 원고의 본래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제3자인 ■■■■자에게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피건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8호 규정을 부동산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제3조는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1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제8호 규정이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고유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제8호를 소급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건물이 아



니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희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별지 1

■■■■도 ■■■■군 ■■■■읍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철근콘트리트 지붕 2층 공장

1층 2,138.43㎡

2층 2,115.89㎡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공장시설(창고)

1층 396.89㎡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12175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